

하남시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853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9. 4. .
제 출 자 : 하 남 시 장

1. 제안이유

- 가.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 에서 대규모점포 등의 의무휴업과 관련하여 월 이틀을 공휴일로 하되, 이해당사자 합의를 거친 경우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고, 이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“이해당사자”의 범위를 지정하는 조항 신설
- 나.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
- 다. 의무휴업일 변경지정 규정 신설

2. 주요내용

- 가. “이해당사자”의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 신설(안 제2조 제8항)
- 나.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8조 제3항, 제4항)
- 다. 의무휴업일 변경지정 규정 신설 (안 제14조의2 제1항, 제3호)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신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6. 예산수반 사항 : 해당없음

7. 입법예고 결과

가. 입법예고 기간 : 2019년 3월 20일 ~ 4월 9일 까지(20일간)

나. 의견내용 : 의견없음

8. 부서협의 결과

가. 규제개혁 관련협의 : 해당없음

나. 성별영향 평가 : 의견없음

9.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10. 관련부서 : 경기도청 소상공인과

하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“이해당사자”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- 가. 하남시 안에서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였거나,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또는 대표가 위임한 사람
- 나.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전통시장 대표나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상점가 대표. 다만, 단체가 없는 경우 하남시 안에서 상인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사람
- 다.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 - 1) 하남시 안의 소비자 단체의 대표
 - 2) 중소유통협력업체 대표
 - 3)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유통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.
- ④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유통산업발전법 시

행규칙」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른다.

제14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설 및 추석(이하 이 조에서 “명절“이라 한다)의 경우 명절 당일의 의무휴업일로 하고, 명절 직전의 의무휴업일 또는 명절 후의 첫 의무휴업일은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

제14조의2제3항 중 “등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그” 를 “등의” 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서명		일자리경제과
입 안 자	부서장 직위·성명	일자리경제과장 김 희 태
	팀장 직위·성명	소상공인팀장 정 주 연
	담당자 성명·전화번호	박 대 환 (790-5642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(생략)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<u>“이해당사자”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</u></p> <p><u>가. 하남시 안에서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였거나,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또는 대표가 위임한 사람</u></p> <p><u>나.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전통시장 대표나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상점가 대표. 다만, 단체가 없는 경우 하남시 안에서 상인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사람</u></p> <p><u>다.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/u></p> <p style="margin-left: 2em;"><u>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</u></p> <p style="margin-left: 2em;">1) <u>하남시 안의 소비자 단체의 대표</u></p> <p style="margin-left: 2em;">2) <u>중소유통협력업체 대표</u></p> <p style="margin-left: 2em;">3) <u>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</u></p>
<p>제8조(유통업상생발전협회의의 구성·운영) ①·② (생략)</p> <p><u>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, 위</u></p>	<p>제8조(유통업상생발전협회의의 구성·운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,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<u>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</u></p> <p><u>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</u></p> <p><u>가. 하남시 안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</u></p> <p><u>나. 하남시 안의 재래시장, 수퍼마켓,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</u></p> <p><u>다. 하남시 안의 소비자단체의 대표</u></p> <p><u>라. 하남시 안의 상공회의소 관계자</u></p> <p><u>마. 하남시 안의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</u></p> <p><u>바. 하남시 안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</u></p> <p><u>사. 기타 하남시 안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</u></p> <p><u>2. 하남시 공무원 중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4급 공무원</u></p> <p><u>④ 부회장은 유통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.</u></p>	<p><u>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유통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.</u></p> <p><u>④ 그 밖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」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른다.</u></p>
<p>제14조의2(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) ① (생략)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14조의2(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3. 설 및 추석(이하이 조에서 "명절"이라 한다)의 경우 명절 당일을 의무휴업일로 하고 명절 직전의 의무휴업일 또는 명절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② (생략)</p> <p>③ 시장은 제1항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과 관련하여 대형마트와 대규모점포 개설자, 주변 중소유통기업 그리고 주변 상인 및 주민 <u>등 이해관계인</u> <u>들을 대상으로 그</u>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</p> <p>④·⑤ (생략)</p>	<p><u>후의 첫 의무휴업일은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<u>등의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④·⑤ (현행과 같음)</p>

관계법령 발췌서

■ 유통산업발전법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,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7조의5(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) ①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(이하 “대규모점포등“이라 한다)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“라 한다)를 둔다.
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.

제12조의2(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) ①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,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(相生發展)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(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)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연간 총매출액 중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영업시간 제한

2. 의무휴업일 지정

②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.

③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,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한다.

■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23조(사업조정 신청 등)

④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로서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기업 등이 사업을

인수·개시하거나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■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

제4조의2(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) 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는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회장은 부시장(특별자치시의 경우 행정부시장을 말한다)·부군수·부구청장이 되고, 위원은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.

1. 해당 지역에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
2.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, 슈퍼마켓,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 - 가. 해당 지역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
 - 나. 해당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 - 다. 그 밖에 대·중소유통 협력업체·납품업체·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
4. 해당 특별자치시·시·군·구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
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④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1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
2.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4조의3(협의회의 운영 등)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·시간·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.

④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회장은 필요에 따라

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.

⑤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
1.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
2.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
3.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대·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, 공동조사연구, 지역유통산업발전,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.